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77
----------	------

발의연월일 : 2024. 4. 11.

발의의원 : 신동윤 의원 등 12인

1. 제안이유

상임위원장 선거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상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하되, 후보자 등록에 관한 절차를 신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상임위원장 선거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의회 운영 현황을 반영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에 관한 절차 신설
(안 제12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나. 상임위원장·부상임위원장에 대한 직무대리 규정 삭제(안 제12조제6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를 준용하여” 를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 개시 1시간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 개시 전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 정견발표를 할 수 있되, 정견발표 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한다.

제12조제6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제12조 관련)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주택) (핸드폰)		
등록신청 직위			
<p style="text-align: center;">「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후보 등록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p> <p style="text-align: center;"> 신청인 (서명) </p> <p style="margin-top: 50px;">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 귀하</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상임위원장) ① (생략)</p> <p>② 상임위원장은 제11조에 따라 선임된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선거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를 준용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단서 신설></p> <p>③ ~ ⑤ (생략)</p> <p>⑥ 상임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부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u>다만, 상임위원장과 부상임위원장이 모두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상임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제12조(상임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 ----- . 다만,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 개시 1시간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 개시 전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 정견발표를 할 수 있 되, 정견발표 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한다.</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 ----- ---. <단서 삭제></p>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법률)」(2023.3.21. 일부개정, 2023.9.22. 시행)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